

내부통제기준 변경안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&lt;추가&gt;</p>	<p>&lt;신설&gt;  <b>제82조(자금세탁방지체제의 구축)</b> ①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(STR), 고액 현금거래보고(CTR)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,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(이하 “자금세탁행위등” 이라 한다)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·운영하여야 한다</p> <p>④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, 효과성을 검토·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·운영하여야 한다.</p>

	<p>⑤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제83조(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)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, 분석,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p>
--	--

시행일 : 2018.03.20